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높은위험]

동부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 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투자설명서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동부차이나본토 RQFII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에 대한 투자 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부 차이나본토 RQFII 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동부차이나본토 RQFII 증권자투자신탁(H)[주식] (B1205)
 2.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동부자산운용 주식회사(대표전화 : 787-3700)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Fullgoal Fund Management**(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
 4.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 (www.dongbuam.co.kr) 및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작성기준일 : 2015.8.25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5.8.28**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개시(2015년 4월 2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9. 존속기간 :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 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 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상세목차

I. 집합투자기구의 정보

1. 투자목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운용전문인력
6. 투자실적 추이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4. 전환 절차 및 방법

III. 요약 재무정보

1. 요약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판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이 투자신탁은 중국 상해 및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상품으로 관련 외화환전 및 해외 송금 등과 관련하여 중국의 외환관리규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 (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간 이 투 자 설 명 서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해외주식(중국본토A주식에 주로 투자)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중국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 신탁 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 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동부차이나본토RQFII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목적

외국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의 가치 상승에 따른 이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 신탁 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 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중국본토A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동부차이나 본토RQFII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10%이하 범위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2) 환위험관리 :

-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중국본토A주식 등 외화로 표시된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므로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로 인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 자산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환헤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단 외화표시 자산에의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거나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원화-달러화 통화선물(환) 등을 활용한 부분환헤지(모투자신탁에의 투자금액 중 외화 자산의 미국 달러화 환산 평가액 중 해당자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지분 상당액의 80%±20% 수준에서 환헤지)를 실시하므로 미국 달러화 대비 중국 위안화의 환율 변동에는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중국 위안화로 거래되는 중국 관련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미국 달러화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이 발생할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의 기본목적은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환헤지의 장점 및 단점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외화자산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기본적으로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환헤지의 비용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이용한 환헤지전략을 수행하는데 시장상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조합하거나 어느 한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증거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어 환헤지 비용 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은 계약환율 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비용을 별도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내파생상품의 환헤지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재 하지 않습니다.
환헤지가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환율이 하락(외화대비 원화가치 상승)할 경우 외화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차익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되며, 환율이 상승(원화대비 해당 외화가치 상승)하는 경우 외화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익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손실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됩니다. 따라서 환헤지를 통해 환율 변동이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가치의 변동, 환헤지 시행 시기의 시차, 헤지비용 등의 이유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 되기는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해당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자산가치 변동과 환율변동이 해당 펀드의 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비교지수 : (CSI300 Index * 85%) + (Call * 15%)

시장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수익률은 동부자산운용 홈페이지(www.dongbuam.co.kr)에서 확인가능)

- CSI300 Index는 중국의 전문지수산출기관인 중국증권지수공사 (China Securities Index Co.,Ltd)에서 발표하는 대표지수로서 상해거래소 및 심천거래소의 상장 종목 중 대표적인 300여개 종목으로 이루어진 지수로서 2004.12.31을 기준으로 하여 1,000으로 시작하였습니다.

- CSI300지수는 중국증권지수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sindex.com.cn>)등을 통하여 자세한 산출방식, 구성종목, 현재 가격 및 과거시세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부차이나본토RQFII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전략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중국본토 A주식에 투자하여 향후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차익이득을 추구합니다.

(2) 홍콩과 국내에 상장된 A주식 관련 ETF에도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3)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동부자산운용이고 이 투자신탁의 해외주식 등에 대한 운용업무는 운용위탁계약에 의거 **Fullgoal Fund Management [富国基金]** 가 담당하고 있으며 위탁운용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외운용자 변동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개요
- 회사명 : Fullgoal Fund Management [富国基金]
- 설립일 : 1999년 4월 13일
- 총 운용자산 : 2014년 12월말 기준 1,508억 원

(4) 성장가능성이 높은 저 평가된 종목을 발굴하여 장기 안정적인 투자수익 추구

- Bottom-up(상향식) 리서치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고 저 평가된 종목 위주로 발굴 투자
- 단기적인 시장상황에 의존하기보다는 장기 성장성과 가치평가를 통해 자산 및 업종배분
- 소수 우량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가 아닌 분산투자를 통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구축
- 시황에 따른 단기매매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에 근거한 장기투자 지향

(5) 투자프로세스



* 중국본토A주식 : 중국 상해증권거래소 및 심천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중 중국 내국인과 중국증권감독위원회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적격외국기관투자가(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와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가(RQFII)(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만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 : 중국본토의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적격기관투자가를 말하며 CRSC(중국증권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자격을 얻게 되면 SAFE(중국외환관리국)으로부터 중국 투자에 대한 투자한도(Quota)를 받게 되며 위안화 적격외국인투자가(RQFII)는 이 투자한도(Quota)내에서 중국 주식 등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동부자산운용은 2014년 12월 26일 CRSC로부터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 투자대상국 현황-중국

1. 수도 : 베이징
2. 통화 : 인민폐(RMB)
3. 주요 경제지표

국가	인구(백만명)	기준	GDP		주요산업	
			각국 통화(십억)	USD(십억)		
중국	1,367.52	2014	CNY	64,452.87	10,355.35	제조업, 가전산업, 화학산업 등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4

(6) 환위험 관리전략 : 환율변동 위험 노출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모두자신탁으로서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해지 전략을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해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통화에 대한 외환 거래의 유동성이 증가 또는 거래 비용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거래 위험이 축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매니저는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환해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은 해당 자투자신탁의 환해지 전략에 따라 환위험관리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CSI300 Index * 90%)(원화환산수익률) + (Call * 10%)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고 있는 모두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금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투자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두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해지 전략을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이며 모두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해외투자 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투자신탁은 모두자신탁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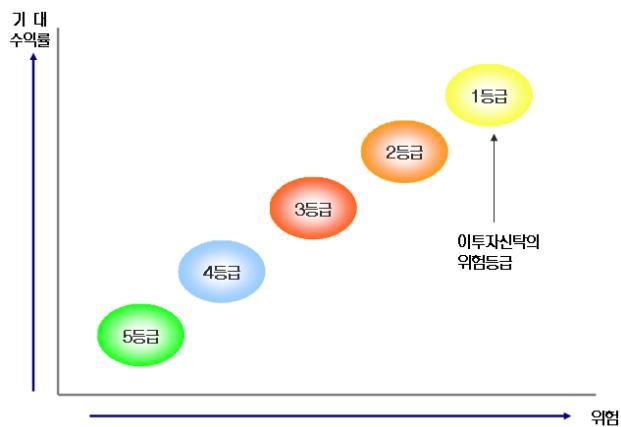
	<p>투자금액 중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화 환산 평가액 중 해당자투자신탁의 모 투자신탁 지분 상당액의 $80\% \pm 20\%$ 수준에서 통화선물(환)거래로 환위험 해지를 원칙으로 하며, 미국 달러화 대비 중국 위안화의 환율 변동에는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중국 위안화로 거래되는 중국 관련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미국 달러화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이 발생할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p> <p>또한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해지비율은 목표해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의 기본 목적은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p>
국가위험	<p>이 투자신탁은 중국본토 A주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인 중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p>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관련 위험	<p>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수 있습니다.</p>
중국본토주식 매매차익 과세 위험	<p>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중국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합니다. 중국과세당국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QFII 및 RQFII 를 통한 중국본토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중국과세당국의 이러한 결정 이후 설정되는 펀드이므로, 설정일 현재 중국본토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 과세에 대비한 과세준비금의 유보 및 적립을 하지 않습니다. 추후 중국과세당국이 과세를 결정하게 되면 투자신탁의 과세준비금의 유보 및 적립 또한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펀드내 유보 및 적립금은 중국과세당국의 결정 및 해당 시점의 감독법규 준수와 수익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처리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p>
투자자금 회수 연기 위험	<p>중국 당국의 해외로의 송금규제정책 등으로 인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환매대금 지급일정대로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환매대금 지급이 연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p> <p>또한 향후에도 중국당국의 해외로의 송금규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자금 회수연기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p>
기회비용 및 수수료 위험	<p>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통화가치 하락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환헤지를 실행함에 따라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 발생 가능한 환차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 됩니다.</p>
RQFII의 자격취소 또는 투자제한에 따른 위험	<p>집합투자업자는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로서 중국본토의 주식 시장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기간 중 중국 당국으로부터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자격을 제한받거나 규정 위반에 따른 투자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 중국본토의 주식시장에 투자가 곤란하거나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정하고 있는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p>

주)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60% 이상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70%이상 투자하므로 5등급 중 **1등급**(**매우 높은 위험**)수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해외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위험과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여 해당 투자신탁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대상국가의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5. 운용전문인력(2015.3.12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이동준	1974	책임운용 전문인력	36개	11,967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자산운용글로벌운용본부팀장(현직) - 삼성증권 신탁팀 - 한국투신운용 애널리스트 - 한국투신운용 글로벌운용역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현직) - 에셋플러스자산운용 글로벌운용팀
김다혜	1982	부책임운 용전문 인력	2개	1,669억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운용팀의 팀운용입니다.

- “책임운용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해당사항 없음

II

매입 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A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1.0%이내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A-E	인터넷가입 투자자	납입금액의 0.5%이내			
C1	제한없음				
C2	C1 수익증권 1년 이상 보유				
C3	C1 수익증권 2년 이상 보유				
C4	C1 수익증권 3년 이상 보유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C-E	인터넷가입 투자자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C-I	최초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투자자				
C-F	집합투자기구, 제 9 조 제 24 항에 의한 신탁, 전문투자자,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보유자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 수료가 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 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 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S-I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투자자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종류)	지급비율(연간, %)							
	집합 투자	판매	수탁	일반사무 관리	기타 <small>주1)</small> 비용	총 보수·비용 비율 TER ²⁾	합성 총보 수 · 비용 비율 ³⁾	증권거래 비용 ⁴⁾
A	0.90	0.70	0.05	0.01	-	1.66	1.66	-
A-E	0.90	0.35	0.05	0.01	-	1.31	1.31	-
C1	0.90	1.40	0.05	0.01	-	2.36	2.36	-
C2	0.90	1.10	0.05	0.01	-	2.06	2.06	-
C3	0.90	0.80	0.05	0.01	-	1.76	1.76	-
C4	0.90	0.70	0.05	0.01	-	1.66	1.66	-
C-E	0.90	0.50	0.05	0.01	-	1.46	1.46	-
C-I	0.90	0.10	0.05	0.01	-	1.06	1.06	-
C-F	0.90	0.03	0.05	0.01	-	0.99	0.99	-
C-W	0.90	0.00	0.05	0.01	-	0.96	0.96	-
C-P	0.90	0.65	0.05	0.01	-	1.61	1.61	-
S	0.90	0.30	0.05	0.01	-	1.26	1.26	-
S-P	0.90	0.195	0.05	0.01	-	1.155	1.155	-
S-I	0.90	0.015	0.05	0.01	-	0.975	0.975	-
C-P2	0.90	0.80	0.05	0.01		1.76	1.76	-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사유발생시	-	-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타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기타비용 예시 :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 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보수 등(단, 세부지출내역은 편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기타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총보수·비용 비율은 기타비용 비율을 합산하지 아니한 수치입니다.

주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주4)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거래비용 예시 : 국내주식매수수료, 국내채권매수수료, 장내파생매수수료, 기타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해외주식매수수료, 해외채권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 매수수료, 해외파생 등 매수수료, 해외워런트 등 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편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5)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은 이 자투자신탁과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단위 : 원)

투자기간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	271,584	643,050	1,052,592	2,269,630
종류 A-E	186,617	481,220	806,020	1,771,233
종류 C1가입자로 자동전환시	247,800	678,657	1,092,294	2,321,503
종류 C-E	153,300	483,278	847,079	1,928,191
종류 C-I	111,300	350,873	615,003	1,399,919
종류 C-F	103,950	327,702	574,389	1,307,472
종류 C-W	100,800	317,772	556,984	1,267,852
종류 C-P	169,050	532,930	934,108	2,126,293
종류 S	132,300	417,076	731,041	1,664,055
종류 S-P	121,275	382,319	670,121	1,525,384
종류 S-I	102,375	322,737	565,686	1,287,662
종류 C-P2	184,800	582,582	1,021,137	2,324,395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종류 S의 경우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상기 비용예시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류 C1 수익증권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 1년 단위로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가정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2. 과세

(1) 투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합니다. 또한 수익금액이 크게 발생될 경우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지방소득세 포함)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 (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3) 수익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2015.1.1.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중국본토시장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은 투자설명서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에서 설명한 “중국 세제상 과세위험” 때문에 달리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판매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개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개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신탁재산을 모두자 신탁에 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두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 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두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dongbuam.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수수료 등 종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매입 및 판매절차

(1) 매입.

구분	1 영업일	2 영업일	3 영업일
17시(오후 5시) 이전에 납입시	입금일 (매입청구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17시(오후 5시) 경과후 납입시	입금일	(매입청구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2) 판매.

구분	1영업일	2영업일	3영업일	4영업일	5영업일	6영업일	7영업일
17시(오후 5시) 이전에 환매신청시	환매 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오후 5시)	환매			기준가격			환매대금지 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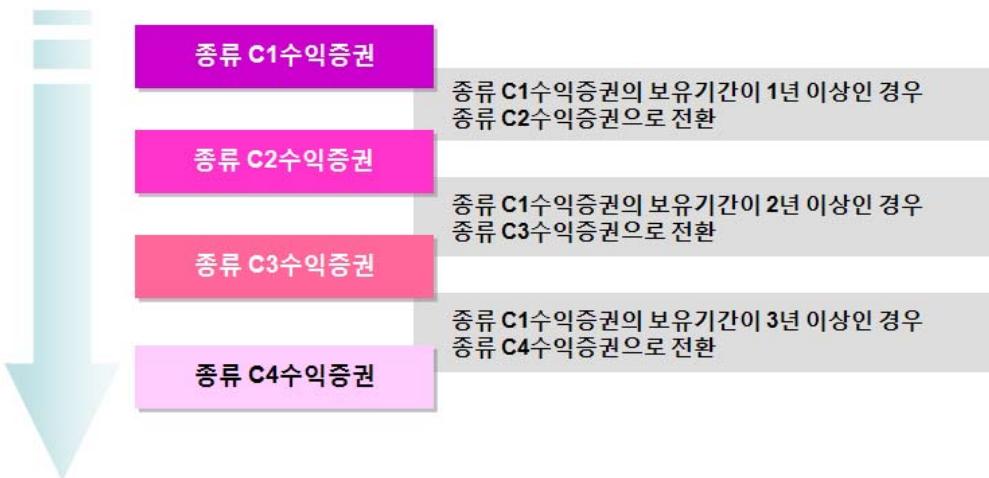
경과후 환매신청시	청구일			적용일			
-----------	-----	--	--	-----	--	--	--

* 환매대금 지급일이 중국본토의 공휴일이거나 영업일이 아닌 경우 중국본토의 공휴일이 아닌 날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3) (2)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신탁계약 제 50 조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공시

1. 중국 당국의 외환 통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국외로의 송금이 제한되는 경우 :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가능일에 환매대금 지급

4. 전환 절차 및 방법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있는 종류 C1 수익증권에 대하여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에 따라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 전환하는 경우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되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
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전환하고자 하는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전환일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수익자의 환매 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납입분에 대해서는(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III **요약 재무정보 : 해당사항 없음**